

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중 "사무과, 조사연구부, 지도보급부, 진로교육부, 교육평가부"를 "조사연구부·지도보급부·진로교육부·교육평가부 및 사무과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,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"를 "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,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"로 한다.

제4조를 제8조로, 제5조를 제4조로, 제6조를 제5조로, 제7조를 제6조로, 제8조를 제7조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